

#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2021. .

청주고용센터 실업급여팀

안녕하십니까?

청주고용센터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입니다.

오늘, **1차 실업급여신청**을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셔야 하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주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급여가 결정된 내용은 배부받으신 <취업희망카드> 1페이지에 붙여드린 "**수급자격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수급자격증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담당자의 성명과 민원창구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바로 밑 "소정급여일수 1/2시점"에 표시된 날짜는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된 내용(취업희망카드 28페이지)입니다.
- 수급자격증의 가운데 부분은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총일수), 구직급여일액(1일 책정된 실업급여지급액), 수급만료일(실업급여 신청한 날로부터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으시게 되는 마지막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수급자격증의 아래 부분에는 희망직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차 부터 구직활동 시 희망직종과 관련된 지원내역을 제출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희망직종은 최대 3개 직종까지 등록가능하며, 워크넷에서 확인 및 수정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가 부지급되는 경우]

<취업희망카드> 2페이지에는 구직활동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전화로만 알아보시는 경우
- 채용계획이 없거나 이미 채용이 끝난 곳에 서명만 받아오는 경우
- 지원하셨던 곳으로 반복해서 지원하시는 경우
- 희망직종과 전혀 관련없는 직종으로 지원하시는 경우 등
-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될 시 급여지급이 제한될수 있으니 취업희망카드 2페이지 내용을 숙지해주세요.

## [실업급여 신청 일정]

<취업희망카드> 4페이지에 4차까지의 일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1차인 오늘 급여가 처리되면, 신청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다른 사업장으로의 이직가능한 기간)으로 급여에서 제외되며,
- 8일째 되는 날부터 오늘까지 총 8일분 급여(건설일용외로 퇴직하신 경우 15일분 급여)가 지급되며, 실업급여는 **신청한 다음날 오후부터 5일 안에 입금**됩니다.
- 2차, 3차, 4차 일정을 보시면 각각 4주마다 같은 요일로 지정되어있고, 4주(28일)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만큼 급여처리가 됩니다.
  - \* 4주후가 공휴일인 경우 지정일을 변경하여 안내 드리고 있으며, 이 때는 4주(28일)간격으로 지급되지 않고 실제 방문한 날짜만큼 일할계산하여 급여지급처리되나 총 실업급여수급일은 변동이 없습니다.
- **2차부터는 구직활동이 수행**되어야 급여지급이 되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내일(방문한 다음날)부터 지정일까지 1회이상**하시면 됩니다.

## [구직활동 방법]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구인업체에 입사지원하시는 방법 외에 취업특강, 직업훈련, 자영업준비활동 등이 있으며, 상세 내용은 <취업희망카드> 2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구인업체 입사지원)** 증빙방법은 <취업희망카드> 9~10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며, **붙임의 『구직증빙자료 첨부시 서류 안내』**를 참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취업특강)** 고용보험시스템에 연계된 온라인취업특강, **유튜브에 게시된 고용센터 취업특강을 이수**하신 경우, 워크넷 심리검사(총1회 한정)도 인정가능합니다.

### ◆유튜브 취업특강 이수방법 안내◆

- ① 유튜브([www.youtube.com](http://www.youtube.com)) 에서 "고용보험 취업특강"검색
- ② 총 3개 과목이 있으며, 선택한 과목의 동영상(4개)를 보신 후
- ③ 수강한 과목의 수강확인서를 제출
  - ☞ 수강확인서는 <청주고용센터>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 또는 센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직업훈련)**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교육을 받고 계시거나 자비로 교육을 들으시는 경우, 교육기관에 "**수강증명서**"와 "**출석부**" 사본을 요청하시면 구직활동 증빙자료로 처리 가능합니다.
- **(유관기관 취업상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새일센터 등 취업지원기관에서 취업상담을 받으신 경우,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경우도 구직활동으로 인정가능합니다.
- **(자영업 준비활동)** 창업 및 특수고용직(보험영업원, 배달대행, 개인사업소득자 등) 등록 전 준비과정 등을 "재취업활동계획서 및 내역서" 및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 자영업 준비활동시 반드시 2달전엔 담당자에게 사전 신고\*

### [취업하셨을 경우]

- (취업사실 신고) 취업 전날까지 급여신청 하실 수 있으며, 급여 신청은 취업 후 2달 이내 ①실업인정신청서와 ②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온라인·팩스·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취업 전날까지 급여가 지급됩니다.
- (재실업신고) 재취업하신 후 단기간 근무후 다시 퇴직을 하셨을 경우 퇴직 후 7일 이내 센터에 내방하여 다시 퇴직하셨음을 신고 퇴직 다음 날부터 실업급여 만료일까지는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시도록 조치해드립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취업희망카드>28페이지에 상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1/2이상 남겨놓고 재취업후 1년이상 근무하셨을 경우에 지급되며, 급여는 잔여일수의 1/2입니다.
- 취업사실신고, 재실업신고,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잊지 말고 안내된 기한 내에 신청 및 신고하셔야 됨을 유의바랍니다.

### [창업 또는 특수고용직 위촉전 사전신고]

창업 또는 특수고용직(보험영업원, 배달대행, 개인사업소득자 등)을 계획하실 경우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이는 구직활동수행에 있어 창업 또는 특수고용직 준비과정으로 구직활동으로 인정가능하며,
-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접수하신 후에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후 창업 또는 특수고용직으로 등록되어, 1년이상 운영하신 경우에 한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이니,

-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업개시(등록) 2달 전엔 말씀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근로사실 신고]

-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동안 일을 하시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한 날은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발생한 소득 전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님)
  - 근로한 날에 대한 급여는 나중에 수령 예정이라 하더라도 근로한 날 기준으로 근로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 신고한 날에 대하여 급여지급이 제외되며, 구직활동으로 인정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는 취업처리가 되어야 하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일 방문 불가시]

지정된 실업인정일은 반드시 센터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1회 착오) 개인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 1회에 한하여 날짜변경이 되며, 날짜변경은 지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센터에 방문시에만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개인사유) 수급자 본인의 병원진료 또는 부득이한 이유로 방문이 불가한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시면 날짜변경에 필요한 증명자료 제출을 안내드리고, 이 경우는 1회 착오 실업인정이 아닌 정당한 이유로 날짜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상담]

이외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담당창구는 수급자격증 맨 앞면에 <□번 창구>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담당자의 전화번호는 수급자격증 하단에 “043-230-673□” 기재되어 있고, 지정일 안내 문자 등을 받으신 번호입니다.
- 실업인정 담당자들은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하여 센터 2층에서 일부 근무하고, 방문민원 분산을 위하여 1층 설명회 및 4층 교육장으로 이동근무를 하고 있어 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오후 3시~5시 사이에는 직접 통화가 가능합니다.

이외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꼭 아셔야 할 내용은 수급자격증에 기재되어 있으니, 취업희망카드를 꼭 읽어보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급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수급자분들의 건강과 재취업을 기원합니다.

- ◆ 실업급여문의: 043-230-6700(콜센터)
- ◆ 창구담당자: 043-230-673□(창구번호)
- ◆ 인터넷 관련문의: 1577-7114
- ◆ 팩스번호: 0508-8230-0660

## 붙임 구직증빙자료 첨부시 서류 안내

- ① 면접참여시(면접확인서)
- ② 팩스나 등기로 이력서 보냈을 경우: 모집공고문+영수증
- ③ 취업포털사이트에서 입사지원시: 모집공고문+취업활동증명서
- ④ E-mail로 입사지원시: 모집공고문+보낸편지함  
(보낸사람 및 날짜 확인 가능한 자료로 첨부)
- ⑤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시: 워크넷 입사지원내역 출력

### ① 면접참여시(면접확인서)

## 면접 확인서

※ 「하위구직활동」-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았으나 지원-응모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규정에 의거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구직자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60.이.이.
모집(응시)분야	경비원		
면접 경로	<input type="checkbox"/> 워크넷 <input type="checkbox"/> 타 취업포털사이트 <input type="checkbox"/> 생활정보지(교차로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치인소개 <input type="checkbox"/> 고용센터 알선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일자리센터 알선		

위 사람이 21년 02월 이일 우리 회사의 구인에 의하여 면접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사업장명 : OO 아파트 관리사무소  
 ■ 주소 : 청주시 서원1로 1순환로 642  
 ■ 전화번호 : 043-230-6700  
 ■ 대표자 (또는 면접관) : 김고용 (인/인)

모

공고문

2

명

함

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시청

### ② 팩스나 등기로 이력서 보냈을 경우

The image shows a job posting notice with a yellow arrow pointing to a receipt. The receipt is for a faxed resume, dated 2021.02.02, an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applicant and the employer.

### ③ 취업포털사이트에서 입사지원시 (공고문+취업활동증명서)

## 모집공고문

# +

## 구직활동 확인서

제 202 호

성명: 오

주소: 충북 청주시

연락처: 010

오학식님의 취업활동확인서입니다.

입사지원일	기업명	주소	면역처	지원방법	비고
2021.02.02	OO	충	청	200	온라인

본은 2021년 2월 22일(수) 14:00:00 ~ 2021년 2월 22일(수) 14:00:00  
 [\*\*\*\*]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통해 위 기업에 입사지원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취업사이트